

리테일 : 제2023-79

2023.04.14
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
제 목 :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 공시

1. 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에서 운용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펀드명:

-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
- 하나UBS아시안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

나. 내 역:

펀드명	종목명	매매일자	매매구분	매매수량 (주,좌)	단가 (현지통화)	매매금액 (백만원)	자산총액 비중	통화
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	Frasers Logistics & Commercial Trust	2023-04-13	취득	113,800	1	148	2.17%	SGD
하나UBS아시안리츠부동산[재간접]	Frasers Logistics & Commercial Trust	2023-04-13	취득	262,900	1	341	0.38%	SGD

※ 상기 글로벌리츠 펀드의 매매내역은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 펀드의 매매 내역임.

근 거: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 제5호

자본시장법

제89조(수시공시)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 <2009. 2. 3., 2011. 8. 4.>

시행령

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9. 2. 3., 2010. 6. 11., 2015. 10. 23., 2017. 5. 8.>

6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나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끝.

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이원중



수신처: 하나은행, 하나금융투자, DB금융투자, IBK투자증권, KB증권, NH농협은행, NH투자증권, SK증권, 광주은행, 교보증권, 교보생명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대구은행, 미래에셋증권, 미래에셋생명, 메리츠증권, 부국증권, 삼성증권, 수협중앙회, 스탠다드차타드은행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투자증권

리테일 : 2023-81

2023.04.17
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
제 목 :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 공시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 사에서 운용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펀드명:

-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

나. 내역:

종목명	매매일자	매매구분	매매수량	단가	매매금액	자산총액	통화
			(주,좌)	(현지통화)	(백만원)	비중	
Extra Space Storage Inc	2023-04-14	취득	4,241	159	879	1.02%	USD

※ 상기 매매내역은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 펀드의 매매 내역임.

다. 근 거: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 제5호

자본시장법

제89조(수시공시)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 <2009. 2. 3., 2011. 8. 4.>

시행령

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9. 2. 3., 2010. 6. 11., 2015. 10. 23., 2017. 5. 8.>

6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나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끝

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이원종



수신처: 하나은행, 하나금융투자, DB금융투자, IBK투자증권, KB증권, NH농협은행, NH투자증권, SK증권, 광주은행, 교보증권, 교보생명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대구은행, 미래에셋증권, 미래에셋생명, 메리츠증권, 부국증권, 수협중앙회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투자증권